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매칭하여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관련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질적 향상 제고
-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고용·노동·경영 등에의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 활용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나. 추진근거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

- 1)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사전교육
- 2)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및 활동실비·참여수당 지급
- 3) 참여기관과 참여자 연계 매칭 및 활동내역 관리
- 4) 그 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일체

라.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 ~사업 정산 완료시까지

마. 위탁조건

- 1)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으로,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제외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마) 행정기관

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2) 최근 1년 이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특정 정당·종교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기관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 1) 선정방법 : 서류 심사(1차)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2차)

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 구성근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 구성인원 : 6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 1 포함)

○ 위원자격

-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국·소장
-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평가내용 :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종합 심사

가) 평가항목(안)

구 분	평가항목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인력	▪ 법인·단체현황(설립목적, 사업목표 등) ▪ 최근 3년간 취업·일자리 창출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운영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센터장·상담사 등 적정 인력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운영목표·비전·세부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가능성 ▪ 예산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
지역사회 기여	▪ 지역내 일자리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연계 가능성 ▪ 지역경제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3) 평가방법 : 서류 심사(1차) 후 심사위원회 심사(2차)

사.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기 타 :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50세~69세)의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한 공모로 일자리 창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